

『인천광역시 청소년대상 조례안 조례안』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「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」 제22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09년 9월 21일

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의 장

인천광역시 청소년대상 조례안 입법예고

1. 제안이유

- 청소년들의 밝고 건전한 모범적인 생활을 통해 재능을 발휘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청소년을 발굴 시상함으로써 청소년의 건전육성과 올바른 청소년상을 정립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수상대상자는 인천광역시에 1년이상 거주하는 9세이상 24세이하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대상, 효행, 선행, 면학, 장애극복, 예·체능 등 수상부분을 선정하도록 함.(안 제2조).
- 나. 수상후보자의 추천은 각급 기관장, 학교장, 사회단체장 및 청소년단체장으로 함.(안 제3조).
- 다. 시장은 매년 청소년대상 시상식 30일전까지 청소년대상 후보자를 선정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고,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.(안 제4조).
- 라. 시상은 매년 1회로 하며,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장과 부상을 수여하도록 함.(안 제5조).
- 마. 동일공적으로 기 수상한 자는 수상대상에서 제외함.(안 제8조).

3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0월 10일까지(20일간)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의회의장(참조: 시의회문교사회전문위원실, 전화032-440-6223, 팩스 032-440-8764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
나. 의견제출자의 주소·성명(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) 및 전화번호

제 출 자	해당 조항	찬반여부 및 사유	비고
○ 주 소: ○ 성 명: ○ 연락처:			

4. 참고자료

인천광역시 청소년대상 조례안 1부.

인천광역시 청소년대상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청소년의 건전육성과 올바른 청소년상 정립을 위하여 대상, 효행, 선행, 노력 등 각 분야의 모범청소년에게 수여하는 인천광역시 청소년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수상대상자) ① 인천광역시 청소년대상(이하 "청소년대상"이라 한다) 수상대상자는 공고일 현재 1년이상 인천광역시에 거주하고 있는 9세이상 24세이하의 청소년으로서 다음 각호의 부문에서 공적이 뚜렷한 자로 한다.

1. 대상 : 당해년도 수상후보자중 효행, 선행, 노력 등 여러면에서 성행이 우수하여 모든 청소년의 귀감이 되는 자.
2. 효행부문 : 부모에게 효도하고 노인공경을 몸소 실천한 자.
3. 선행부문 : 남을 위하여 선행을 많이 한 자.
4. 면학부문 : 역경속에서도 학업에 임하여 그 성적이 우수하여 장래가 촉망되는 자
5. 장애극복부문 : 장애극복에 귀감이 되는 자
6. 예체능부문 : 각종 예술·체육활동 분야에서 그 기능과 재질이 탁월한 자

② 수상인원은 제1항 제1호의 대상 1명과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각 부문별 부문상 1명을 선정하며, 심사결과 수상대상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아니한다.

제3조(수상후보자 추천) 수상후보자의 추천은 각급 기관장, 학교장, 사회단체장 및 청소년단체장으로 한다.

제4조(위원회) ① 인천광역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은 매년 청소년대상 시상식 30일전까지 청소년대상 수상후보자를 선정하기 위한 인천광역시 청소년대상 심사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구성하여야 한다.

② 위원회의 구성 및 심사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제5조(시상) ① 청소년대상은 매년1회 시상하며 수상자에게는 표창장, 메달 및 부상을 수여한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상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장이 정한다.

제6조(유족 및 대리자의 수령) 수상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사망하였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접 수상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자에게 시상할 수 있다.

제7조(기록 보존) 시장은 청소년대상 수상자의 인적사항, 공적사항, 수상내역 등을 기록한 대장을 비치하고 이를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.

제8조(이중 포상금지) 동일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.

제9조(수당 등) 인천광역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심사위원회 대하여는 「인천광역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」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10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